

[별표 5]

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
부여기준(제7조 관련)

1. 상품바코드(GTIN)를 사용하여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(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)를 조합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바코드번호(GTIN) + 생산자, 또는 수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해 부여한 번호(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(로트)번호 포함)
2. 상품바코드(GTIN)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부여한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(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) +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식품이력추적관리를 위해 부여한 번호(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(로트)번호 포함)
3. 제7조 제1항에 따라 제품에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(또는 수입식품등의 유통이력추적관리번호)를 표시하는 경우 예시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.

예시 1)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: ○○○○○○○○○

예시 2)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: 상품바코드번호+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(로트)번호

예시 3) 식품이력추적관리번호 : 식품이력추적등록번호(○○○○○○)+ 소비기한 또는 제조일자 또는 식별단위(로트)번호